

『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○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

무을농악[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(2017.1.5.)]의 전승보전을 위해 전수교육장을 마련하고 시민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(구)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를 매입코자 함.

○ 주특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

2014. 3월 실시한 문화재특별점검 결과(E등급)에 따라 주특사 폐탑[도 문화재자료 제295호(1994.9.29.)]이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매입하여 주특사 폐탑의 문화재적 가치의 홍보 및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를 위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○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

「의료법인 산동의원」 해산으로 정관에 따라 2014년 국가로 귀속되었으나, 현재 산동보건지소 및 어린이집으로 이용 중인 산동면 종합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 도모 및 건강관리와 여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

기존 해평면 게이트볼장이 국가산업5단지에 편입·철거되어 해평면 월호리 167-1번지 일부를 매입, 대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○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

- 구미하수처리장은 2010년 이후 점차적인 하수량 증가로 시설용량 ($Q=330,000\text{m}^3/\text{일}$)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, 목표연도 2020년 유입하수량이 $380,773\text{m}^3/\text{일}$ 로 시설용량 116% 초과하고 기존부지의 협소로 부지 내 증설이 어려워 용량 초과분 $55,000\text{m}^3/\text{일}$ 처리를 위한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함.
- 하수처리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, 우리시 재정여건상 조속한 시일내 건설이 어려워 재정부담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하수처리장 신설을 민간투자사업(BTO)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낙동강수질 보전에 힘쓰고자 함.

○ 선산하수처리장 증설

교리지구, 교리2지구 및 이문지구 등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하수량 증가 요인이 다수 발생하여 ‘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’에 따라 선산하수처리장을 증설함으로써,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

구미하수처리장 운영부하 가중(가동율 112%)의 큰 부하를 차지하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 녹조예방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3단계 도입(2016년)에 따른 오염삭감시설 설치로 구미5국가산업단지 규모의 개발 할당량 확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

- 위 치 :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160외 6필지
- 대 상 : 토지 8,384m²(2,536평)
건물 지상1~2층, 6동 / 연면적 1,011.12m²(305.8평)
- 기준가격 : 550백만원
 - 토지 212.7백만원(공시지가)
 - 건물 337.3백만원(시가표준액)

□ 주륙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

- 위 치 :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123
- 대 상 : 토지 1,983m²(599.8평)
- 기준가격 : 0.6백만원(공시지가)

□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

-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105-3번지 외 2필지
- 대 상 : 토지 2,198m²(665평)
- 기준가격 : 1,216백만원(공시지가)

□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

○ 위 치 :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167-1

○ 대 상

- 토지 9,077m² 중 5,000m²
-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 조성 1식

○ 기준금액 : 492백만원

- 토지 92백만원(공시지가)
- 시설물 400백만원(시설비)

□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

○ 위 치 : 구미시 오태동 172-3외 51필지

○ 대 상 : 토지 66,545m²(20,130평)

건물 지하2층, 지상2층/연면적 5,414m²(1,637평)

하수처리시설 1식(시설용량 55,000m³/일)

○ 기준가격 : 85,500백만원

- 토지 2,900백만원(공시지가)
- 시설 82,600백만원(시설비)

□ 선산하수처리장 증설

○ 위 치 :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751, 752

○ 대 상 : 토지 5,680.6m²(1,781평)

건물 지하1층 지상2층/연면적 795.86m²(240.7평)

하수처리시설 1식(시설용량 2,000m³/일)

○ 기준가격 : 11,619백만원

- 토지 134백만원(공시지가)
- 시설 11,485백만원(시설비)

□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

- 위 치 : 칠곡군 석적읍 중리 872번지 일원
- 대 상 : 건물 지하1층, 지상2층/연면적 1,785㎡(540평)
가축분뇨처리시설 1식(시설용량 150㎥/일)
- 기준가격 : 17,550백만원(시설비)

【처분재산】

□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

- 위 치 :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160외 6필지
- 대 상 : 건물 지상1~2층, 5동/ 927.12㎡(280.4평)
- 기준가격 : 309.3백만원(시가표준액)
- 기타사항 : 2013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하거나 긴급보수보
강이 필요한 “D”등급 판정 받음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』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시 “지방의회 의결”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,

- 먼저,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및 처분 건으로 무을농악이 2017년 1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무을농악 전승보전을 위한 전수교육장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시민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음은, 주륙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건으로 주륙사 폐탑 부지를 매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음은,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건으로 「의료법인 산동의원」 해산으로 정관에 따라 부지가 2014년 국가로 귀속되어 매년 상당한 금액의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바,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건강관리 및 여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음은,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건으로 기존 해평면 게이트볼장이 국가산업5단지에 편입·철거되어 해평면 월호리 167-1번지 일부를 매입하여 대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을 사료됨.
- 다음은,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건으로 구미하수처리장은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하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, 2020년에는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의 116%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하며, 예산소요 및 향후

시설운영의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(BTO)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.

- 다음은,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건으로 교리지구 등 선산지역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하수량 증가 요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, ‘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’에 따라 선산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음은,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으로 현재 가축분뇨를 구미하수처리장에 처리함에 따라 운영부하가(가동율 112%)가 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, 별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로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낙동강 녹조예방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